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22호 2011. 3. 21.(월)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240호(인천광역시연수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244호(신조 공인 공고) 11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 -24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03. 16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 나. 제안서평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 ~ 제4조)
 - 평가위원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주민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추천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을 제안서평가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진행(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
- 안건은 평가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천하여 결정하고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04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참조: 재무회계과, 전화 810-7141, FAX 821-9566)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 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6.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7.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별지 제2호 서식)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⑦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를 포함한다)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진행)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 한다.
-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별지 제3호 서식)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분야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직장명				직위(직급)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리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 사업명 :

평가위원	평 점	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각서(제3조 관련)

본인은 『사 업 명』수행기관(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제안서 및 평가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5.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실과 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 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 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 - 244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3. 16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다 음

1. 신조 인영 : 붙임
2. 사용 개시일 : 2011. 03. 21.
3. 신 조 사 유 : 인증기 구입에 따른 내부 장착용 공인

신조공인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신조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 교통행정과민원전용	2.4cm × 2.4cm		인증기용 사용예정일 2011.03.21